

학습자료 (개인정보 보호교육)

1차시 개인정보 보호교육

*개인정보의 의미

- 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영상정보를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.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.
- 따라서 사자(死者)의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라 할 수 없는 데, 다만 사자의 정보라도 현재 생존하고 있는 유족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포함 될 수 있다.
- 또한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역시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.

*개인정보자기결정권

-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, 누구에게,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, 이용 되도록 할 것인지 정보 주체가, 즉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
*개인정보 보호의 의미

-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처리되지 않도록 함을 말하며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개인 정보 처리자는 적법, 정당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, 정확성, 완전성, 최신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 또,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, 정보주체의 권리도 보장 하면서,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, 개인정보는 익명처리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.

*개인정보 보호법 도입

-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, 법 적용의 사각지대, 국제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요구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.
-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회전반의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법으로,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, 개인 등이 모두 따라야 한다.

*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

- 개인정보 수집 시,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하며, 개인정보를 입·출력하거나 보관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

*개인정보 파기

- 개인정보 파기란 개인정보의 보존기간 경과 및 수집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하게 파기하는 방법을 말한다.